

보고사항

□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99. 3. 22

< 공고내용 >

(화순군의회 공고 1999-3호)

- 집회일시 : '99. 3. 29 (月) 오전 10 시

- 집회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결된 안건 처리 현황

- 화순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 - '99. 2. 11 집행부 이송

○ 공포일자 : '99. 3. 2

○ 공포번호 : 화순군조례 제 1592 호

- 화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 '99. 2. 11 집행부 이송

○ 공포일자 : '99. 3. 2

○ 공포번호 : 화순군조례 제 1591호

-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99. 2. 11 집행부 이송

○ 공포일자 : '99. 3. 2

○ 공포번호 : 화순군조례 제 1593 호

- 화순군환경기본조례 - '99. 2. 11 집행부 이송

○ 공포일자 : '99. 3. 2

○ 공포번호 : 화순군조례 제 1594 호

□ 각종 의안 발의 현황

-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99. 3. 17 의원발의

○ 발의자 : 문팔갑 의원외 2인

○ 회기 : '99. 3. 29 (月) ~ 3. 31 (水) (3일간)

○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99. 3. 17 의원발의

○ 발의자 : 문팔갑 의원외 2인

○ 출석요구내용 : 별첨

○ 화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 '99. 3. 11 군수제출

○ 제안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필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인하로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면제되나, 휴폐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업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농공단지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어 부실화된 농공단지 대체 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현재 지방세법 제276조에서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포함)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주려면 지방세법 제276조를 개정함이 원칙이나 지방세법 제276조를 개정할 경우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까지 감면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고
- 또한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대체입주업체에 대한 감면조치 없이도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 확대 필요성이 없는 농공단지까지 감면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감면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제22조의 3(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감면)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거 6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것을 최초 적용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 제22조의 4(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 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자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임.

※ '99. 3. 13. 총무위원회로 회부

○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조례증개정조례안 - '99. 3. 11 군수제출

○ 제안이유

-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안 제18조 폐지

(34)

군수는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유료 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한다.

※ '99. 3. 13. 총무위원회로 회부

○ 화순군동면공동오·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99. 3. 11 군수제출

-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의 지방세 증가산금 징수방법과 상이함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법과 일치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증가산금 부과기준을 10만원 미만은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안 제25조 3항)

※ '99. 3. 13. 총무위원회로 회부

○ 화순군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 조례 중개정조례안 - '99. 3. 11 군수제출

○ 제안이유

-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 감면규정 신설
- ※ '99. 3. 13.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 광주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분리(안) 개진의 건

- '98. 2. 27 군수제출

○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구역 중 우리군 41.70km²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어 향후 개발계획수립시 협의 등 행·재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시 광주광역시와 의견상충이 예상되므로 광주광역시와 분리하여 화순읍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함.

○ 개발제한구역 현황

- 개발제한구역 권역 : 광주권 (광주역 반경 15~20km 이내)
- 개발제한구역 면적 : 41.70km² (1읍 2개면 16개리)
 - 화순군 도시계획 중복 : 13.5km² (6개리)
- 결정고시 : 1973. 1. 17. (건설부고시 제17호)
- 지적고시 : 1974. 2. 6. (건설부고시 제29호)
- 관리대상
 - 인구 : 1,097명 (418세대)
 - 건축물 : 1,233동 (주택 387, 부속사 396, 기타 440)
 - 토지면적 : 41.7km² (8,482필지)
 - (농경지 4.5km², 임야 35.1km², 대지 0.3km², 기타 1.8km²)

○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 운영

- 개발제한구역 관리 근거 : 도시계획법 준용

- 화순군 관할 개발제한구역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구역내 편입
- 도시계획 입안권자 : 광주광역시장

○ 분리의 필요성

- 구역내 개발의 필요가 있어 사업 실행시 개발계획 수립후 광주광역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함으로 행·재정적 낭비
- 개발제한구역 조정시 광주광역시와 의견 해소
- 향후 개발계획시 군 실정에 맞는 입안과 절차 간소화

○ 인접 시, 군의 관리방법 변화

- 1999. 2. 9 광주도시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 분리에 따른 부시장·부군수 회의시 (장소 : 도 건설교통국장실) 자체개발계획수립 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로부터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토.

○ 현행대로 존치시

- 화순군 관할 개발제한구역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구역내 편입
- 도시계획 입안권자 : 광주광역시장
- 구역내 개발의 필요가 있어 개발계획 수립시 광주광역시장과 협의 후 처리 - 행·재정적 낭비

○ 도시계획 분리시

- 화순군 관할 개발제한구역 : 화순군 도시계획구역내 편입
- 도시계획 입안권자 : 화순군수
- 구역내 개발의 필요가 있어 개발계획 수립시 군 실정에 맞는 계획 입안과 절차의 간소화

○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

- 도시계획구역 분리에 관한 의견
- 기타 계획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 '99. 3. 3.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 '99. 2. 11

○ 제출일자 : '99. 3. 11

○ 제출자 :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 조사결과 보고서 : 별첨

□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1.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조사특위 활동 보고서 채택의 건